

한국·일본·중국 연구교류 추진에 관한 각서

2017년 10월 27일

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

이사장 彭華民

일본사회복지학회회장 岩崎晋也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Lee Bong Joo

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 일본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교류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하의 사항에 합의한다.

1. 공동연구의 추진

- (1)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3 학회는 공동연구의 기획에 대하여 협의할 자리를 마련한다.
- (2) 3 학회는 각각 담당자를 정하여 담당자의 의견교환을 토대로 공동연구기획의 구체안을 정리하고 각각의 학회 이사회에 제안, 합의를 얻어 기획 실시를 도모하도록 한다.

2. 학술연구대회의 대표자 초대

- (1) 학술연구대회에서 3 년에 한번씩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대표자를 초대한다.
- (2) 3 학회는 다음과 같이 초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는 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전국대회에 한국사회복지학회, 일본사회복지학회가 추천한 대표를 3 명씩 초청하도록 한다. 일본사회복지학회는 일본사회복지학회추계대회에 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 한국사회복지학회가 추천한 대표를 3 명씩 초청하도록 한다. 한국사회복지학회는 한국사회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에 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 일본사회복지학회가 추천한 대표를 3 명씩 초청하도록 한다.
- (3) 초청하는 측의 학회는 대표자가 대회에서 연구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획을 준비하도록 노력한다.
- (4) 대표자의 여비(출발지부터 대회개최지(공항·역)까지 교통비)는 초청받은 측에서 부담하며, 대회 당일 및 전박을 포함한 전체 일정의 숙박 및 현지 교통비 등의 모든 체재비용은 초청하는 측의 학회가 부담한다.
- (5)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국학회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개인연구발표

- (1) 3 학회의 추천으로 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전국대회 및 일본사회복지학회추계대회, 한국사회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에서 원칙상 각 국가가 5 팀까지 개인연구발표를 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1 팀당 2 명까지 학회 참가비를 면제하도록 한다.
- (2) 개인연구발표의 제 1 발표자는 추천하는 학회의 정회원(중국은 위원회가 정회원으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단, 공동연구자는 3 학회 중 한 학회의 정회원(중국은 위원회가 정회원으로 인정한 자)일 경우 인정하도록 한다.
- (3)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표자가 준비한다.

4. 본 각서의 기한 및 개폐

- (1) 본 각서의 유효기한은 조인한 날부터 3 년간으로 한다. 다만, 3 학회의 합의에 따라 유효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 3 학회 중 한 쪽이 본 각서의 개정 혹은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학회의 협의에 근거하여 개정 혹은 폐기할 수 있다.

부칙

3 개국의 공동연구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상기 3. 개인연구발표이외에 중국사회학회사회복지연구전문위원회전국대회 및 일본사회복지학회추계대회, 한국사회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에서 공동연구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공동연구발표 제 1 발표자는 개최학회정회원(중국은 위원회가 정회원으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공동연구자는 3 학회 중 한 학회의 정회원(중국은 위원회가 정회원으로 인정한 자)일 경우 인정하도록 한다.